

제 3 4 6 호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석  
편집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1973. 2. 10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444. 6090

#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1290 호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운영규칙개정규칙.....3

제 1291 호 서울특별시립국악관현악단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

송무국장	법제국장	법무과장	기획관리관	결재
공보실장	공보실장	공보실장	공보실장	

◎ 고 시

제 21 호 서울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인가 ..... 10

제 22 호 도시계획소로 변경 ..... 10

제 23 호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 ..... 11

◎ 공 고

제 21 호 일개미수거 지역 공고 ..... 11

◎ 사 령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한다.

2.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규 칙**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운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3년 2월 10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 1290 호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  
운영규칙중개정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무원) 교향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연예사의 종류) ① 교향악단에 연주를 위하여 필요한 연예사를 둔다.

② 연예사의 종류와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조 (위원회등의운영) ① 단장이 교향악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음악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

위원회"라한다)

2. 교향악단자체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한다)

3. 기타위원회

제 5 조 (음악기술심사위원회)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9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위원장은 교향악단 단장(이하 "단장"이라한다)이 되고, 전임지휘자는 동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음악에 권위가 있는 인사중에서 부단장의 제청으로 단장이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단장이 요구한 단원의 음악기술에 대한 심사평가

2. 악기류 검토

3. 기타 연주에 필요한 기악비용

⑤ 전항 제 1 호에 의한 기술심사결과 그 평점이 70점에 미달하는 단원은 재입 조치한다. 다만,

장래 기술향상의 전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음악기술심사의 평점기준은 기술경력 50점 장래성 30점 등성 20점

합계 100점으로 한다.

제 6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씩 포함  
한 위원 7~9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전담 지휘자가 된다.

③ 위원회는 수석연구자 이상의 단원  
중에서 부단장의 제청으로 단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단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심의

2. 단원자질 향상과 발전에 필요  
한 사항의 심의

3. 기타 그향학단의 운영 및 연  
수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제 7조 (기타위원회) ① 제 4조 제 3호

에 규정된 기타 위원회는 단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를  
설치한다.

② 기타 위원회의 명칭과 그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다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8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각위원회 ① (시정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의 위원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 부터 시행한다.

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 ②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당시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도중에 임명된 때에는 당해 연도  
말에 당연 재임된다.

제 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공보실에서 이  
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별지  
서식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단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보고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향학단운영에 이를  
반영시킬 수 있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로 정한다.

제 10조 (그향학단 사무장) 그향학단

사무장은 필요할 때에 위원회의 회  
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11조 (단원의 복무) 그향학단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법과 서울특별시  
인사사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지방  
공무원복무조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다.

#### 부 칙

① (시정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의 위원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 부터 시행한다.

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 ②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당시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55세이상의 정년퇴직 대상자는 1973

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다.

조 문 대 비 표	
현	경
<p>제 1 조 (적부) 서울특별시·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한다)은 아래의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민을 위한 음악회</li> <li>2. 외래 귀빈을 위한 음악회</li> <li>3. 친선을 위한 순견</li> <li>4. 기타 필요한 인수</li> </ol>	<p>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공무원) ① 교향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② 교향악단에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축탁을 둔다.</p> <p>③ 전항의 축탁을 매년도 예산으로서 정한다.</p>	<p>제 2 조 (공무원) 교향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 3 조 (연예사의 증류) ① 교향악단의 연주를 위하여 필요한 연예사를 둔다.</p> <p>② 연예사의 증류와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 4 조 (위원회의 통솔치운영) ① 단장이 교향악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음악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li> </ol>

현	계 정
	<p>2. 교향악단, 자제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한다)</p> <p>3. 기타위원회</p> <p>제 5 조 (음악기술심사위원회)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9명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향악단 단장(이하 "단장"이라한다)이 되고, 전임직위자는 동위원회 위원이 된다.</p> <p>③위원은 음악에 권위가 있는 인사 중에서 부단장의 제청으로 단장이 위촉한다.</p> <p>④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장이 요구한 단원의 음악기술에 대한 심사평가</li> <li>2. 악기류 검토</li> <li>3. 기타 연주에 필요한 지식제공</li> </ol> <p>⑤전항 제 1호에 의한 기술심사 결과 그 평점이 70점에 미달하는 단원은 해임 조치한다. 다만 장래 기술향상의 전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음악기술심사의 평정기준은 기술경력 50점, 장래성 30점, 음성 20점 합계 100점으로 한다.</p> <p>제 6 조 (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p>

원	내
	<p>한 위원 7~9명으로 구성한다.</p> <p>①위원회의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임거취자가 된다.</p> <p>②위원은 수석업무자 이상의 단원중에서 부단장의 제청으로 단장이 위촉한다.</p> <p>③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심의</li> <li>2. 단원 자질향상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li> <li>3. 기타 교향낙단의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li> </ol> <p>제 7 조 (기타위원회) ①제 4 조제 3 호에 규정된 기타 위원회는 단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를 설치한다.</p> <p>②기타위원회의 명칭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 8 조 (위원회의위원임기) ①각위원회의 위원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를 위촉한다.</p> <p>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도중에 임명된 때에는 당해 연도말에 당연 해임된다.</p>

헌	정
	<p>제 9 조 ( 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공보실에서 이를 주관한다.</p> <p>②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별지서식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단장에 지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단장은 보고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향악단운영에 이를 반영시킬 수 있다.</p> <p>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제 10 조 ( 교향악단사무장 ) 교향악단사무장은 필요할때에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수있다.</p> <p>제 11 조 ( 단원의복무 ) 교향악단원의복무는 지방공무원법과 서울특별시인사사무처리규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이 규칙공포 당시 55세이상의 정년퇴직 대상자는 1973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p>

개 정 이 용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의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교향악단을 명실공히 시민정서생활의 향상과 민족문화의 정화를 위한 본래의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 교향악단 운영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립국악관현악단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3. 2. 10.

외한다.  
제 3 조 (연예사의등수) ①관현악단의 연주자를 위하여 필요한 견본사물문자.  
②연예사의 종류와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서울특별시규칙 제 1291 호  
서울특별시립국악관현악단 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

제 4 조 (인사특별규정) 관장은 관현악단의 근무하는 연희사중 무용 기타 특수연거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직 조치할 수 있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국악관현악단 (이하 관현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준용규정) 관현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 2 조 (공무원) 관현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원은 따로 정하는바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 식 (별첨)

제 회 시립국악관현악단운영위원회 결정사항 보고  
일 시 :  
장 소 :  
참석위원 :

안	건	실 의 내 용	결 결 사 랑
---	---	---------	---------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 21 호

서울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1. 서울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제 2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건설국 건설행정과와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3. 2. 8.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성동구 성수동 2기 (별첨도면 참조)

나. 사업의 종류: 도로신설공사

다.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라. 착공 및 준공예정일: 73. 2-

73. 8. 15

3. 노 선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1		10	320	성북구명일동산 6	성동구명일동산 8	단지사업구역의 55m 포함.
변경	소로	1		10	320	.	.	단지사업구역의 2 = 55m만 위치 변경

별첨 도면참조 (도면은 시청도시계획과 및 시민봉사실과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임)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전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바. 총합기간: 73. 2. 8. ~ 73. 2. 22. (14일간)

◎ 서울특별시고시 제 22 호

도시계획소로변경

1. 서울시 고시제 27호 (71.4.20)로 실시계획 인가된바 있는 명일동 주택단지에 관련된 도시계획소로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동법 시행령 제 6조제 1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시민봉사실과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3. 2. 9.

서울특별시장

㉔ 서울특별시고시 제 23 호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41 호 (72. 10.6) 로 시설 결정 한 서울특별시 철거민 이주 정착단지 조성을 위 한 일단의 주택이 조성사업 실시 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2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고시한다.

2.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주택관리 관 개량과하 서대문구청 시민봉사 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3. 2.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진행의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동산 93 번지 (임)

및 48-2 (임)

나. 사업종류 및 명칭: 서울특별시

철거민이주 정착단지 조성사업

다. 사업감행자: 서울특별시 장

라. 착공 및 준공예정일:

착 공: 인가후 일주일 이내

준 공: 6개월 이내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전문소재지 제 1 번 지목 및 소용

권 이득회 권리명색 (별첨)

하. 일가내용: 별첨인가도서 (별첨)



㉕ 서울특별시공고 제 21 호

전개비수거지역공고

오문정소벌 제 3 조 제 1 항 나사

동법 시행령 제 1 조 제 1 항의 규정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소 지

역에서 제외되는 전개와 비수거 지

역을 지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 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3. 1.

서울특별시 장



<p>중 구 지방행정서기보 김원석 성동구 근무를 명함.</p> <p>중 구 조전부지방행정서기보 임동을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p>	<p>성 동 구 지방행정서기 권경성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p> <p>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 임우환 수도사업소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p>	